

시 방 서

1. 공 사 명 : 체육동 페인트 도장공사
2. 장 소 : 마포문화센터(체육동)
4. 공사착수일 : 2005. 7. 25. ~ 31

(1) 일 반 사 항

1. 적용범위

- 1) 본 시방서는 마포문화센터 2층 3층 4층 도장공사에 적용한다.
- 2) 2층, 3층, 4층 복도전체 골프장 사무실 367㎡ 도장(메직톤 코트 MT-17)
- 3) 4층 골프장내부 325㎡ 도장 (방균페인트 백색 WS-728)
- 4) 수영장 샤워장내 천장알루미늄 유성 페인트 128㎡ 도장
- 3) 공사시 반입된 자재는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행할 것
- 4) 도장시 부주위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나 불량개소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 또한 타시설물의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.

(2) 특 기 시 방 서

1. 일반사항

- 1) 샤워장내 천장알루미늄 탈색부분은 제거후 표면상 나타나지 않도록 도장할 것
- 2) 체육동 시설 부착물 제거후 도장시 손상부분은 즉시원상 복구하고 도장 후 부착물을 부착한다..
- 3) 탈의실내 소방시설, 전등, 옷장, 집기류 등은 페인트칠이 닿지 않도록 할 것.

4) 개인사물함 등은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 한다.

3. 준수사항

- 1) 착공전 착공계와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.
- 2) 작업시간은 09:00 ~ 18:00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작업이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후 시행한다.
- 3) 모든 작업은 반드시 안전절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후 작업에 임한다.
- 4) 화기작업시 공사의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다.
- 5) 당일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 주위를 정리 정돈하여 다음날 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- 6) 일과 후에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.
- 7) 공사로 인하여 센터의 타 시설물에 문제가 예상될 때는 담장자와 협의를 한후 작업에 임하며, 고의 또는 부주위로 센터의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- 8) 반입된 자재 및 장비 등은 담당자에게 확인후 반출한다.
- 9) 공사에 필요한 용수 및 전기는 공사에서 제공한다.
- 10) 공사로 인한 쓰레기 등은 시공자가 당일 반출 처리한다.
- 11) 작업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우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12) 상기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계약에 따른다.

발주자 : 마포구시설관리공단 (인)
(마포문화체육센터)

계약자 : 상 호
주 소

대표자 : (인)
☎ :

2005. 6.

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귀하

14



지하1층 평면도



2층 평면도



3층 평면도



4층 평면도